

K-OTC시장 투자자 유의사항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OTC시장 운영규정"에 따라 위탁자가 K-OTC시장 매매거래 주문전 K-OTC시장 제도의 특성 및 비상장주식의 투자위험성 등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및 교부하는 것입니다.

1. K-OTC 시장의 성격

K-OTC 시장은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서 신규등록(지정) 요건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원 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K-OTC 시장은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으로서 동 시장에 등록(지정)되었다는 사실이 우량기업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기업부의 특징

K-OTC 시장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으로서 공모실적이 있는 기업이며 해당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을 지정합니다. 지정기업은 K-OTC 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으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기업정보에 따라 지정, 해제, 매매정지 등의 시장 조치를 취합니다.

3. 매매방식

K-OTC 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됩니다(상대매매방식). 호가제출 당시의 상대호가가격에 비해 5 호가가격단위를 초과하는 불합리한 가격의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에서 호가의 접수를 거부 처리합니다. 위탁증거금율은 100%입니다. 신규등록(지정) 후 최초 매매개시일에는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30~500%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매를 체결합니다.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은 전일의 거래량가중평균주가이며, 가격제한폭은 $\pm 30\%$ 입니다. 거래가 없더라도 기세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공시수준

등록법인의 공시제도는 거래소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업정보가 적시에 공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법인은 연 2회 정기공시를 하고, 17개 항목의 주요경영사항 발생시 수시공시를 하며, 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합니다.

지정법인의 경우에는 K-OTC 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해당여부 등 지정기업의 기업정보 및 투자정보는 단지 투자 참고사항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불가피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하거나 정보의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기업정보 확인방법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조회공시는 K-OTC 시장 홈페이지,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이므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http://www.seibro.or.kr>)을 통하여 주식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법인의 주요사항보고 항목은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항목과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K-OTC 시장 홈페이지에서도 등록법인과 지정법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K-OTC 시장은 거래소시장에 비해 기업분석보고서 등 투자참고자료가 부족하고 공시항목도 최소화되어 있어 투자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K-OTC 시장은 거래량 등 주식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우며 소량의 거래로 주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7.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주문을 하는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주문수락 거부 등 K-OTC 시장 운영규정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위탁자의 범위

K-OTC 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상 매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등록(지정)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록(지정)법인(발행회사), 인수인, 소유투자가 1%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투자자(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자)가 K-OTC 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해당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참고) 매출신고서 미제출시에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제휴대출서비스(SLS)계좌의 경우는 K-OTC 주문이 불가합니다.

10.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

K-OTC 시장에서 주식매도시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시행령 참고), 양도소득세(지방세 병과)가 과세됩니다. 거래소시장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에게도 과세(단, 벤처·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되며,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OTC시장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K-OTC시장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투자자 유의사항을 모두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